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449	suyeon@officenex.co.kr
오피스큐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3.31.	
OFFICEQ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13.	www.officeq.co.kr

[오피스큐(OFFICEQ)]

정 보 공 개 서

[(주)오피스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오피스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46-400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46-400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3442-2201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오피스큐	오피스큐(OFFICEQ)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 웰츠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11.20.	2006.12.10.	선장덕,이진재	02-546-4007	02-546-4008
	법인등록번호	110111-3564443	사업자등록번호	106-86-4736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	이진재	오피스큐 (OFFICEQ)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선장덕,이진재	02-546-4007	02-546-40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	선장덕	오피스큐 (OFFICEQ)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선장덕,이진재	02-546-4007	02-546-40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오피스넥스	오피스넥스 (Officenex) 외 4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선장덕,조성우	02-546-4007	02-546-400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오피스큐(OFFICEQ)]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오피스큐(OFFICEQ)	
상 호	오피스큐(OFFICEQ) 00점	
상표(서비스표)	오피스큐 OFFICEQ	등록 45-0018322-0000
로 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하 절삭,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44,236	175,026	69,209	1,632,120	-21,599	-11,711
2023년	185,935	75,501	110,433	1,527,862	-12,461	41,224
2024년	323,737	221,547	102,190	1,470,483	-8,504	-8,243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진재	대표	2020.4.23.~ 현재	공동대표	관리
	선장덕	대표	2020.4.23.~ 현재	공동대표	회사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0

※ 당사의 임원은 비급여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피스넥스 /선장덕, 조성우	가맹사업 경영	2008.8 ~ 현재	오피스넥스(Officenex) (등록번호:20080100007)라는 사무용품업
			2021.9.~ 현재	오피스 25 (등록번호:20212291) 라는 문구업
			2021.10. ~ 현재	뽕꾸뽕꾸 문구야! (등록 번호:20212290)라는 문구업
			2022.9. ~ 현재	문구야 사랑해(등록번호: 20220916)라는 문구업
			2023.7.~현재	캔디비(등록번호:20230980)라는 문구 및 액세서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오피스큐 OFFICEQ (서비스표)	가맹점 운영 및 상표 사용료 수수	출원 2006.3.7. 등록 2006.12.12	출원 45-2006-0000795 등록 45-0018322-0000	(주)오피스큐	2026.12.12.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오피스큐(OFFICEQ)] 가맹사업 현황

1. [오피스큐(OFFICEQ)] 를 시작한 날 : 2006년 12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7 년 3 월 1일-현재는 폐점함)¹

2. [오피스큐(OFFICEQ)]의 연혁²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이진재	2006.12 ~ 200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이병태	2008.10 ~ 2012.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노기철	2012.6 ~ 2013.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이병태	2013.6 ~ 2018.1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0번길 38 (둔산동, 5층)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이진재	2018.1~ 2020.3 ³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6번길 14, 2층(중리동)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이진재, 선장덕	2020.4~ 2025.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4, 1B타워 7
			2025.2 ~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 A502, 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3. [오피스큐(OFFICEQ)]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오피스큐(OFFICEQ)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도소매	사무용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 및 직영점

¹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정보공개서를 2020.3.2. 자진취소 하였으나, 연혁은 기등록되었던 정보공개서를 기초하여 작성함

²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정보공개서를 2020.3.2. 자진취소 하였으나, 연혁은 기등록되었던 정보 공개서를 기초하여 작성함

³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정보공개서를 2020.3.2. 자진취소 하였으나, 이후 회사 정책의 변경으로 정보공개서 재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음

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7	17	-	17	17	-	17	17	-
서울	3	3	-	3	3	-	3	3	-
부산	3	3	-	4	4	-	4	4	-
대구	1	1	-	2	2	-	2	2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3	3	-	3	3	-
강원	1	1	-	1	1	-	1	1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2	2	-	1	1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9	-	-	2	-	17
2023	17	2	-	2	-	17
2024	17	-	-	-	-	17
※ 별첨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오피스큐(OFFICEQ)]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피스 넥스/선 장덕, 조 성우	오피스넥스 (Officenex)	20080100007	사무용품	56/1	53/0	52/1
		오피스 25	20212291	문구업	0/0	4/12	8/3
		빵꾸똥꾸 문구야!	20212290	문구업	201/15	268/2	260/1
		문구야 사랑해	20220916	문구업	2/1	3/1	3/0
		캔디비 (CANDYBEE)	20230980	문구업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7	445,155	8,295	1,862,625	18,626	27,014	900	2개점 제외
서울	3							
부산	4							5개 미만
대구	2							5개 미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1							5개 미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3							5개 미만
강원	1							5개 미만
충북	1							5개 미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1							5개 미만
경남	1							5개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매출액을 알 수 없는 2개점은 평균매출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한 후 기재한 것입니다.
- 상기의 매출액 자료는 정확하지 못하므로 연평균매출액에 의존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지 말기 바라며, 이로 인한 수치의 오류에 따른 손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오피스큐(OFFICEQ)]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4	17	3,303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2024]년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절삭, 부가세별도)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8,016	118,016	-	

광고 선전비	키워드 외		118,016	118,016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02-798-8571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오피스큐(OFFICEQ)]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당사 또는 해당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가입비	5,500	계약체결일에 예치	오픈 전	오픈 후	최초계약기간에 한
	개점 정보 등의 제공대가					
	개점지원 등의 대가					

2) 보증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현금보증금 대신 담보설정, 공증, 보증보험증권 중 택1로 대체합니다. 보증금 선택 방식에 맞추어 계약 종료 시 각 설정 방법을 해지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보증금	20,000	영업개시 1개월 이내	계약불이행 및 미지급 채무액, 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큐(OFFICEQ)]를 운영하기 위해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금을 제외하고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5,500
가맹비	가입비	5,500
	개점 정보 등의 제공대가	
	개점지원 등의 대가	

※ 보증금은 담보설정, 공증, 보증보험증권 중 택1로 대체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65,230	3,262			66㎡(20평) 기준
인테리어		자율	22,000	1,100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간판		자율	5,500	275			전면1면 기준
설비류		자율	13,200	660			
POS 설비		자율	880	44			
초도 물품	카다로그	당사	7,150	358	계약 시 협의결정	발주 전 계약해지	
	상품류	당사	16,500	825			별첨3 참고
※ 설비류는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기본설비가 필요하므로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간판 및 인테리어, 설비류 등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직접시공 및 공급하거나 당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리비는 없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인테리어 금액에서는 냉난방기, 전기승압, 가스설비, 상하수도 전면유리, 철거, 배송차량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와 희망 점포 답사 → 현장 확인 → 담당자의 상권현황 설명 및 영업지역 중복여부 확인 → 가맹희망자 면담 → 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오피스큐의 정책사항 준수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만30세 이상의 자
종업원	가맹점사업자의 자율	만19세 이상인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초도 물품	카다로그	가맹계약에 포함	당사
	상품류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당사	아래※1 참조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후	
판촉 분담금	당사	행사별로 분담	판촉 시행 전 별도 통지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 후	아래※2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당사	아래※3 참조	별도통지	교육 미실행	교육 실시 후	레벨에 따라 다름
로열티	당사	매월 220		기간 경과 전	기간 경과 후	

전산 유지보수비	당사	매월 275		기간 경과 전	기간 경과 후	
물품 등	당사	실주문 가액	주문과 동시에 결제	주문 전	주문 후	
점포 환경개선	해당 인테리어 업체	당사 부담 비용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 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 의 계약에 따름	아래 ※4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부담

[※1. 광고분담금은 브랜드 광고의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50:50으로 부담하며, 가맹점모집광고는 당사가 100% 부담합니다.]

[※2. 판촉비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이상의 반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가 또는 비용분담 거부 시 계약갱신 거절 조건인 당사의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석됩니다.]

[※3. 수시교육의 경우 기본교육은 무료(특수한 사항일 경우 비용이 추가 가능)이며, 특별교육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4. 당사의 부담은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발생비용의 20%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발생비용의 40%이며, 점포환경 개선 시 귀하가 보수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해지·영업 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매출액을 알 수 없는 2개점은 차액가맹금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필요 시	문의 02-3442-2201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일부 가맹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오피스큐(OFFICEQ)]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시 원칙은 포괄적 양수도이며, 양도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 중 일부와, 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가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오피스큐 (OFFICEQ)』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공급품에 한하여 재판매의 가능여부,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10% ~40% 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오피스큐(OFFICEQ)]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업종이 소매업에 해당되어 자료를 생략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오피스큐(OFFICEQ)]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 3 참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이용시간은 협의 후 변경 가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별첨 3 참고	별첨 3 참고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서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문구, 사무용품 등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오피스큐(OFFICEQ)	오피스넥스 (Officnex), 오피스 25, 빵꾸똥꾸 문구야! 문구야 사랑해, 캔디비(CANDYBEE)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당사와 귀하가 구체적 영업지역은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된 바가 없으면, 영업거점 주소지를 중심으로 인구 50만명 당 1점포, 단,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 “구” 단위 별로 1점포로 함	가맹계약서의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상기의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협의하여 결정한 후 가맹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구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오피스큐(OFFICEQ)]**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77.4	0	4.8	17.8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당사는 오프라인 전용상품이 없으나 개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계약 및 갱신 기간

[오피스큐(OFFICEQ)]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의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기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그 절차

당사는 귀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함께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제25조 각호의 1을 위반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8조 제1항의 최초 가맹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제15조에 따른 금전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한 경우 -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22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승인없이 가맹점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제29조 규정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5조 제3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귀하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귀하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의한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귀하가 점포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점포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1조 제4항

나. 귀하 또는 당사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그 절차

귀하 또는 당사에 의한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1조 제3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각각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다. 귀하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그 절차

귀하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3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1개월 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개점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보증금으로 담보목적물(또는 공증, 증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귀하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당사의 승인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오피스큐(OFFICEQ)]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문구, 사무용품 등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	------	----

자율 (09:00 ~ 19:00 권장)	주5일 이상(공휴일 휴무)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은 즉시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 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종업원 수	직접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재고관리 등	담당자 매장 방문 → 품목 보관 및 재고 현황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당사의 임직원	
회계처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출 및 손익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및 판촉 전체 행사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수(1/N)에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광역단위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판촉비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이상의 반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가 또는 비용분담 거부 시 계약갱신 거절 조건인 당사의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석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귀하는 이미 진행된 인테리어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당사는 귀하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합니다. 다만, 개점전 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금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

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금5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금100만원
계약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금150만원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2) 계약 기간 중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당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귀하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당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금일천만원 (₩1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가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귀하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3) 오퍼리스크

귀하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귀하가 입증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5일 내 외	13~14 Page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5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34	
영업지역 선정협의	- 필요 시 입지 주위 정보 제공	D-33~32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예치가맹금 예치		5,500
점포실측/설계	- 간판 시안 및 도면제공	D-29~28	13~14 Page 참조
인테리어 공사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26	
	- 공사 실시	D-25~9	
	- 기자재 및 초도물품	D-8~6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공사 기간 중	
가오픈	- 점포 오픈 최종리허설	D-5~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의 형태, 협의진행 업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의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 ※1참조 <분할지급 시 절차> ○ ※2 참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2.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경영 지도	① 계약이행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②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③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가 요청 시 당사부담 또는 귀하가 요청 시 귀하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오피스큐(OFFICEQ)]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POS 사용법 및 서비스교육, 상품교육, 매장관리, 배송시스템교육 등	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1월 이내	필수 교육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신상품 및 필요 시 전달교육 등	실습교육	1 일 이내	신상품 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이론 및 실습	1 일 이내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오피스큐(OFFICEQ)]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0일 (80h~100h)	교육비 없음	최초 계약 시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1 일(3~6h)	기본이론 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상품 및 필요 시등
	특별교육	1 일(3~6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계약을 맺는 귀하와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반올림,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2. 가맹점리스트

별첨3. 온라인,홈쇼핑,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지 여부

별첨4.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3442-220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온라인,홈쇼핑,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지 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본부 용)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오피스큐 대표 이진재, 선장덕 (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브랜드명 : 오피스큐(OFFICEQ)
연 락 처 : 02-546-8250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오피스큐(OFFICEQ)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오피스큐(OFFICEQ)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 용)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오피스큐 대표 이진재, 선장덕 (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브랜드명 : 오피스큐(OFFICEQ)
연 락 처 : 02-546-8250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오피스큐(OFFICEQ)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오피스큐(OFFICEQ)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사인 또는 날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오피스큐 대표 이진재, 선장덕 (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브랜드명 : 오피스큐(OFFICEQ)
 연 락 처 : 02-546-8250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수령날짜	확인
점포예정지 확정 시	정보공개서와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미확정시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2 년 월 일